

선교복지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에서 수여하는 학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위수여)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수여자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1.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2.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

② <삭제 2017.09.01.>

③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

④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제2호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⑤ 학과특성상 작품논문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. 단, 작품논문을 보고서로 대체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 <신설 2017.09.01.> <개정 2018.09.01.>

제 3 조(학위신청 구비서류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학위논문 신청서 1부
2.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 3부
3. 학위청구 논문요지서 1부

4-4-1-2 제5장 선교복지대학원

4. 지도교수 추천서

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①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4 조(논문제출 및 심사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중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심사한다.

제 5 조(심의)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인준한다.

제 6 조(보고)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석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7 조(시기)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시행한다.

(서식 3호)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 :

년 월 일생

논 문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전공
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
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년 월 일

동서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동 서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 (직인)
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

(별지 제 4호 서식)

석 제 호
학 위 기
성 명 : 0 0 0 년 월 일 생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선교복지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학점을 이수하여 대학원위원회 의 심사에 통과하여 0 0 0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어 인 정함.
년 월 일
선 교 복 지 대 학 원 장 0 0 0
위의 인정에 의하여 0 0 0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
년 월 일
동 서 대 학 교 총 장 0 0 0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